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공공분야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전의 전자정부국의 명칭을 디지털정부국으로 변경하고, 디지털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디지털정부국에 전자정부 서비스를 디지털 기술 기반으로 전환하는 등의 사무를 추가하며, 공공데이터 관련 기능을 통합하기 위하여 정부혁신조직실 및 디지털정부국의 분장 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공공분야 빅데이터 관련 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정원 14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4명, 6급 4명, 7급 3명, 8급 1명)을 행정안전부로 이체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4.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에 주민 직접 참여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참여지원시스템 구축 등의 사무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0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4. 14. ~ 4. 2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행정안전부령 제 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정보공개정책과·공공데이터정책과”를 “정보공개정책과”로 하고, “국민참여혁신과·민원제도혁신과 및 행정정보공유과”를 “국민참여혁신과 및 민원제도혁신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6. 협업과제 관련 부처 간 업무조정 및 지원

제9조제7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3항에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5항을 삭제한다.

13. 전자증명서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14. 전자증명서에 관한 법령 및 제도 개선

15. 전자증명서 관련 기관 간 협의·조정

16.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

17.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 관련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제10조의 제목 “(전자정부국)”을 “(디지털정부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전자정부국장 및 정보기반보호정책관”을 “디지털정부국장 및 공공데이터정책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디지털정부국에 디지털정부정책과·디지털정부기반과·디지털안전정책과·지역디지털협력과·국제디지털협력과·공공데이터정책과·공공데이터유통과·빅데이터분석활용과·공공지능정책과·지능행정기반과·개인정보보호정책과 및 개인정보보호협력과를 둔다.

④ 디지털정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자정부 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
(이하 “디지털 전환”이라 한다) 촉진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3. 전자정부 및 디지털 전환 촉진 업무의 부처 간 조정에 관한 사항
4. 전자정부 추진 및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법·제도에 관한 사항
5. 전자정부 및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전자정부 정책의 조사·연구 및 백서 발간
7. 정보화 환경 변화에 따른 전자정부 대응전략의 수립 및 정책 연구에 관한 사항
8. 전자정부 관련 정보기술의 보급·확산 및 동향 조사에 관한 사항
9. 전자정부서비스의 이용 활성화 및 품질 제고에 관한 사항
10.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실태의 조사 및 분석
11. 전자정부 인력개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12. 공무원의 정보화역량 강화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

13. 전자정부를 위한 홍보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4. 전자정부 관련 자문위원회의 운영 지원

15. 정보화책임관 협의회의 운영 및 각 기관의 정보화담당관의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16. 전자정부에 관한 민간과의 협력 포럼 운영

17. 전자정부에 관한 전문기술 지원기관의 육성·지원

18.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전자정부 관련 전문기관의 관리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 디지털정부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자정부사업 수주·발주제도 및 정보시스템 감리에 관한 사항
2.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 제도에 관한 사항
3. 전자정부 표준화 정책·제도 및 관련 표준의 제정·보급에 관한 사항
4. 전자정부 정보자원관리 정책의 연구, 기획, 조정 및 법·제도 개선
5. 전자정부 정보자원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시책사업의 발굴·추진
6. 전자정부 정보자원의 현황 조사, 수준 진단 및 지원
7. 전자정부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 및 통합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8. 전자정부의 상호운용성에 관한 사항
9. 장애인·고령자 등의 전자정부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에 관한 사

항

10. 행정기관 등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접근성·호환성 등 품질관리 실태조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1. 전자정부 관련 통계의 조사, 지표의 개발·보급 및 조사·연구
12. 전자정부 클라우드 시책 수립 및 도입·구축 지원
13. 행정서비스 및 정보의 연계·통합 방안 수립
14. 전자정부서비스 민간 개방 활성화 정책의 수립·시행 및 시범사업 발굴·추진
15. 전자정부서비스 민간 개방을 위한 공통 플랫폼 구축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16. 행정기관의 공동활용을 위한 응용 소프트웨어 및 표준시스템의 개발·보급 및 유지·관리 지원
17.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의 표준화 및 다기능 사무기기 규격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18. 전자정부 공통서비스 및 공통기반의 구축·지원
19. 전자정부 관련 통합적 성과관리의 총괄·조정 및 제도 개선
20. 전자정부 정보자원 투자 및 성과관리 정책의 수립·추진
21. 전자정부 사업 중복투자 방지에 관한 사항
22. 전자정부 사업 및 지역정보화 사업의 사전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23. 공공애플리케이션 관련 성과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4. 행정관리 역량평가 중 정보화 부문 총괄

25. 전자정부 관련 제품 도입·발주에 관한 사항
 26. 전자정부 관련 제품 시험·평가(「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성능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이 고시된 정보보호시스템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27. 전자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 및 확산 지원
 28. 전자정부 플랫폼(Platform) 구축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에 관한 사항
 29.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업무의 운영 지원
- ⑥ 디지털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보안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보안수준의 조사 및 보안개선대책의 수립·시행
 3.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사이버침해사고의 예방·대응에 관한 사항
 4.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모의훈련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6.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진단, 개선조치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정보보호 기관·단체의 육성·지원 및 신기술 도입 등에 관한 사항

8.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9.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10.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한 보안서버의 적용 및 확산에 관한 사항
12. 행정기관 전자문서의 진본성 확보 및 검증체계의 수립·추진
13. 행정기관 정보보호 인력 양성에 관한 시책의 수립·추진
14. 행정전자서명 인증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 및 조정
15. 행정전자서명 인증기관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16.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17. 행정기관 정보통신망 관련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18. 행정기관 도메인 이름 및 할당받은 아이피(IP) 주소 등 표준의 제정·개정
19. 행정기관 공동활용을 위한 통신서비스의 개발·보급 및 확산
20. 지방자치단체의 통신업무 지원 및 통신보안업무의 지도·점검
21. 행정기관 내 인터넷전화 보급 및 활성화 정책의 수립·시행
22. 행정기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제도의 수립 및 시행
23. 모바일 기반의 디지털 형태 신분증(이하 이 항에서 “모바일 신분증”이라 한다) 도입 관련 기술·제도·정책의 연구·개선에 관한 사항

24. 모바일 신분증 시범사업 추진 및 확산에 대한 사항
 25. 모바일 신분증 공통 플랫폼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 ⑦ 지역디지털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공분야의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 전환 확산 관련 시책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정보화 시행계획의 총괄·조정
 3. 지역정보화 정책의 수립·평가 및 관련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 공통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지역정보화의 지원과 관련된 법인·단체의 육성 지원
 6.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전문기관의 관리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7.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문화·역사·생활정보 콘텐츠의 구축 지원
 8. 지역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의 추진 및 지원
 9. 정보화마을의 기획·선정 및 제도 개선
 10. 미래 지역정보공동체의 조성 및 확산
 11. 남북한 간 전자정부 관련 교류 및 협력
 12. 지방행정데이터 개방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3. 행정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행정공간정보 응용서비스의 개발·확산
 14.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및 지원
 15.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를 활용한 부가서비스의 개발 및 지원

16. 지능정보기술을 접목한 영상정보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17.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서비스 모델 발굴 및 추진
18.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서비스 관련 성과분석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9. 공공분야 디지털 고지·수납 공통 플랫폼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20. 공공분야 디지털 고지·수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제10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글로벌전자정부과장”을 “국제디지털협력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9호 및 제10호 중 “수출”을 각각 “해외진출”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와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전자정부 해외진출 관련 동향 분석 및 사업정보 공유 등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12. 전자정부 관련 해외 홍보에 관한 사항

13. 전자정부 관련 해외 정책 및 기술 동향의 수집·분석에 관한 사항

제10조제9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2항 및 제13항(중전의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⑨ 공공데이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제도·정책의 연구·개선

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3. 공공데이터 관련 현황 조사 및 범정부 데이터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4. 공공데이터 관련 운영실태 조사 및 평가
5. 공공데이터 포털의 구축 운영 및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
6. 공공데이터 품질 관리 및 진단
7. 공공데이터 표준화 정책 및 관련 표준의 제정·보급에 관한 사항
8.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지원
10.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시책 사업 발굴·추진
12. 공공데이터 관련 공공기관의 민간 중복·유사 서비스 개발·제공에 관한 실태조사 및 개선권고
13.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발전 지원
14. 공공데이터 관련 교육·훈련 및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
15. 공공데이터 시책사업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16. 국가기준정보의 지정, 품질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7. 국가기준정보 등 주요 공공데이터의 관리·보존체계 및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 ⑩ 공공데이터유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정보 공유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
2. 행정정보 공유에 관한 법령 및 제도 개선
3. 행정정보 공유를 위한 기관 간 협의·조정
4. 행정정보 공유에 관한 기준 및 절차의 수립·시행
5. 행정정보 공유 신청에 대한 승인
6. 행정정보 공유 활성화 및 실태조사·연구
7. 행정정보 공유 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
8. 정책정보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유통 기반구축 계획의 수립·시행
9. 행정정보 공동이용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10. 행정정보 목록 관리 및 공동이용 행정정보 현황조사에 관한 사항
11. 행정정보 공동이용·유통을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
12. 행정정보 표준화, 품질관리 등 공동이용을 위한 관리체계 마련
13.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제공 및 확대
14. 행정정보 공동이용 이력 기록 유지·관리
15.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교육
16. 행정정보 공동이용 기반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조치
17.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조치
18.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운영 및 관련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19. 공공분야 개인 맞춤형 데이터 활용 서비스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수립·시행

20. 공공분야 개인 맞춤형 데이터 활용 서비스 포털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21. 공공분야 개인 맞춤형 데이터 활용 서비스 이용 활성화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⑪ 빅데이터분석활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분야 빅데이터에 관한 제도의 운영·개선 및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공공분야 빅데이터 관리체계 및 분석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 및 점검
 3. 공공분야 빅데이터의 활용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공공분야 빅데이터 공통기반 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5. 공공분야 빅데이터 분석·활용을 위한 공공·민간 데이터 수집·분석 및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6. 공공분야 빅데이터 분석·활용을 위한 데이터 관리에 관한 사항
 7. 공공분야 빅데이터 분석·활용 관련 신기술 도입에 관한 사항
 8. 공공분야 빅데이터 분석과제 발굴 및 수행에 관한 사항
 9. 공공분야 빅데이터 분석·활용화를 위한 기술지원 및 공무원 등의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10. 공공분야 빅데이터 분석·활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조치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11. 공공분야 빅데이터 분석·활용 관련 민간 협력에 관한 사항

⑫ 공공지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능형 전자정부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2. 공공분야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조정
3. 공공분야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공공분야 인공지능 기술 활용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가공 및 공동
이용에 관한 사항
5. 공공분야 인공지능 관련 신기술 도입에 관한 사항
6. 공공분야 인공지능 활성화를 위한 과제 발굴, 수행, 기술 지원 및 교
육에 관한 사항
7. 공공분야 인공지능 윤리 개발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8. 공공분야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신규 서비스 개발·보급에 관한 사
항
9. 인공지능 기반 국민비서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통 플랫폼 구
축·운영에 관한 사항
10. 인공지능 기반 통합 민원상담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11. 공공분야 인공지능 공통기반 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
12. 정보통신의 융합 등 전자정부 발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협력사
업의 추진
13. 신기술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정비

에 관한 사항

14. 전자정부 분야 선도 기술 수요의 창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5. 전자정부 분야 선도 응용서비스의 개발·제공 및 표준에 관한 사
항

16. 전자정부 분야 선도 기술의 활용 관련 연구 및 관련 기관·단체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17. 전자정부사업 전문기관의 육성 및 지원

18. 뉴미디어를 활용한 전자정부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19. 전자정부 관련 재원의 조달·운용에 관한 사항

20.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시책사업 및 시범사업의 발굴·추진

21.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선정·관리에 관한 사항

22. 전자정부지원사업 재원의 확보 및 관련 업무의 부처 간 조정애 관
한 사항

23. 전자정부 관련 전문기술의 지원에 관한 사항

24. 입법부·사법부 등 공공기관의 전자정부 추진 지원

⑬ 지능행정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공공분야 업무환경 개선 정책 수립 및 시행
에 관한 사항
2. 정부통합지식행정시스템의 운영·개선 및 이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
3. 협업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신기술 기반의 전자적 의사소통 수단 도입 및 운영

5. 스마트워크센터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6. 스마트워크센터 관련 법령·제도 개선 및 관련 기관 간 협의·조정
7. 스마트워크센터 구축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전자정부 클라우드 업무서비스 구축 및 운영
9. 공공부문 영상회의 관련 기본계획 수립·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공공부문 영상회의 관련 법령·제도 개선 및 관련 기관 간 협의·조정
11. 모바일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12. 모바일 전자정부 공통기반의 구축에 관한 사항
13. 모바일 전자정부 추진을 위한 재원의 확보 및 행정기관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4. 모바일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보안성 확보에 관한 사항

제11조제13항제10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의 운용 및 개선
11. 주민조례청구 등 주민참여지원시스템 구축 및 운용

제50조제8항 후단 중 “12명”을 “11명”으로 한다.

제53조제2항 중 “글로벌전자정부과장”을 “국제디지털협력과장”으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1,582”를 “1,596”으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

무원은 제외한다) “1,580”을 “1,594”로 하며, 일반직 계 “1,550”을 “1,564”로 하고,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61”을 “62”로,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을 “2”로,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3”을 “26”으로, 전산사무관 “31”을 “32”로, 행정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전산주사 “16”을 “20”으로,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0”을 “13”으로, 행정서기·공업서기·시설서기·방재안전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32”를 “33”으로 한다.

별표 2의2 중 총계 “1,595”를 “1,609”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1,593”을 “1,607”로 하며, 일반직 계 “1,563”을 “1,577”로 하고,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61”을 “62”로,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을 “2”로,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3”을 “26”으로, 전산사무관 “31”을 “32”로, 행정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전산주사 “16”을 “20”으로,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0”을 “13”으로, 행정서기·공업서기·시설서기·방재안전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29”를 “30”으로 한다.

별표 10 중 총계 “302”를 “288”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301”을 “287”로 하며, 일반직 계 “301”을 “287”로 하고, 3

급 또는 4급 이하 “298”을 “284”로 한다.

별표 12 제1호3)의 조직란 중 “전자정부국”을 “디지털정부국”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정부혁신조직실) ① (생략)	제9조(정부혁신조직실) ① (현행과 같음)
② 정부혁신조직실에 혁신기획과·협업정책과·정보공개정책과·공공데이터정책과·조직기획과·조직진단과·경제조직과·사회조직과·공공서비스혁신과·국민참여혁신과·민원제도혁신과 및 행정정보공유과를 둔다.	② -----정보공개정책과-----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협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u>협업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u>	6. <u>협업과제 관련 부처 간 업무조정 및 지원</u>
7. <u>협업과제 중 시스템 연계·통합 및 정보 공유 관련 부처 간 업무조정 및 지원</u>	<삭 제>
8. <u>신기술 기반의 전자적 의사소통 수단 도입 및 운영</u>	<삭 제>
9. ~ 11. (생략)	9. ~ 11. (현행과 같음)
12. <u>정부통합지식행정시스템의</u>	<삭 제>

운영·개선 및 이용의 촉진

13. ~ 22. (생략)

⑥ (생략)

⑦ 공공데이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제도·정책의
연구·개선

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3.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및 실
무위원회 운영·지원

4. 공공데이터 관련 현황 조사
및 범정부 데이터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5. 공공데이터 관련 운영실태
조사 및 평가

6. 공공데이터 품질 관리 및 진
단

7. 공공데이터 표준화 정책 및
관련 표준의 제정·보급에 관
한 사항

8.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공공데이터 포털의 구축 운

13. ~ 22.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삭제>

영 및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

10.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
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시책 사업
발굴·추진

12. 공공데이터 관련 공공기관
의 민간 중복·유사 서비스
개발·제공에 관한 실태조사
및 개선권고

13.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발전
지원

14. 공공데이터 관련 교육·훈
련 및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

15. 공공데이터 시책사업의 성
과관리에 관한 사항

16. 공공분야 빅데이터에 관한
제도의 운영·개선 및 기본계
획의 수립·시행

17. 공공분야 빅데이터 관리체
계 및 분석 관련 정책의 수립
·추진 및 점검

18. 공공분야 빅데이터 공통기
반 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

19. 공공분야 빅데이터의 활용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⑧ ~ ⑬ (생략)

⑭ 민원제도혁신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 12.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⑮ 행정정보공유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행정정보 공유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

2. 행정정보 공유에 관한 법령
및 제도 개선

3. 행정정보 공유를 위한 기관
간 협의·조정

⑧ ~ ⑬ (현행과 같음)

⑭ -----
-----.

1. ~ 12. (현행과 같음)

13. 전자증명서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14. 전자증명서에 관한 법령 및
제도 개선

15. 전자증명서 관련 기관 간 협
의·조정

16.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
템 구축 및 운영

17.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
템 관련 정보보호 및 개인정
보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삭제>

4. 행정정보 공유에 관한 기준
및 절차의 수립·시행

5. 행정정보 공유 신청에 대한
승인

6. 행정정보 공유 활성화 및 실
태조사·연구

7. 행정정보 공유 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

8. 정책정보 등 행정정보 공동
이용·유통 기반구축 계획의
수립·시행

9. 행정정보 공동이용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10. 행정정보 목록 관리 및 공동
이용 행정정보 현황조사에 관
한 사항

11. 행정정보 공동이용·유통을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

12. 행정정보 표준화, 품질관리
등 공동이용을 위한 관리체계
마련

13.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제공 및 확대

14. 행정정보 공동이용 이력 기
록 유지·관리

15.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교육

16. 행정정보 공동이용 기반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조치

17.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조치

18.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운영 및 관련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19. 전자증명서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20. 전자증명서에 관한 법령 및 제도 개선

21. 전자증명서 관련 기관 간 협의·조정

22.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

23.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 관련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제10조(전자정부국) ① 전자정부국장 및 정보기반보호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10조(디지털정부국) ① 디지털정부국장 및 공공데이터정책관-----

-----.

② 전자정부국에 전자정부정책과·정보화사업성과관리과·스마트서비스과·지역정보지원과·글로벌전자정부과·정보자원정책과·정보기반보호정책과·개인정보보호정책과 및 개인정보보호협력과를 둔다.

③ (생략)

④ 전자정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자정부 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전자정부 업무의 부처 간 조정에 관한 사항

3. 전자정부 추진을 위한 법·제도에 관한 사항

4. 학제

5. 학제

6. 전자정부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7. 전자정부 정책의 조사·연구 및 백서 발간

8. 정보화 환경 변화에 따른 전

② 디지털정부국에 디지털정부정책과·디지털정부기반과·디지털안전정책과·지역디지털협력과·국제디지털협력과·공공데이터정책과·공공데이터유통과·빅데이터분석활용과·공공지능정책과·지능행정기반과·개인정보보호정책과 및 개인정보보호협력과를 둔다.

③ (현행과 같음)

④ 디지털정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자정부 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이하 “디지털 전환”이라 한다) 추진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3. 전자정부 및 디지털 전환 추진 업무의 부처 간 조정에 관한 사항

4. 전자정부 추진 및 디지털 전환 추진을 위한 법·제도에 관한 사항

자정부 대응전략의 수립 및 정책 연구에 관한 사항	5. 전자정부 및 디지털 전환 촉 진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19. 전자정부서비스의 이용 활 성화 및 품질 제고에 관한 사 항	16. 전자정부에 관한 민간과의 협력 포럼 운영
9. 지능형 전자정부 정책 추진 에 관한 사항	6. 전자정부 정책의 조사·연구 및 백서 발간	20. 삭 제	17. 전자정부에 관한 전문기술 지원기관의 육성·지원
10. 삭 제	7. 정보화 환경 변화에 따른 전 자정부 대응전략의 수립 및 정책 연구에 관한 사항	21. 전자정부에 관한 민간과의 협력 포럼 운영	18.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 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 원 등 전자정부 관련 전문기 관의 관리 및 운영 지원에 관 한 사항
11. 전자정부 관련 정보기술의 보급·확산 및 동향 조사에 관한 사항	8. 전자정부 관련 정보기술의 보급·확산 및 동향 조사에 관한 사항	22. 삭 제	19.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 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12. 전자정부 인력개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9. 전자정부서비스의 이용 활성 화 및 품질 제고에 관한 사항	23. 삭 제	
13. 공무원의 정보화역량 강화 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	10.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실태의 조사 및 분석	24. 삭 제	
14. 전자정부를 위한 홍보 및 협 력에 관한 사항	11. 전자정부 인력개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25. 삭 제	
15. 전자정부 관련 자문위원회 의 운영 지원	12. 공무원의 정보화역량 강화 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	26. 전자정부사업 수주·발주제 도 및 정보시스템 감리에 관 한 사항	
16. 정보화책임관 협의회의 운 영 및 각 기관의 정보화담당 관의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13. 전자정부를 위한 홍보 및 협 력에 관한 사항	27.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 제 도에 관한 사항	
17. 전자정부에 관한 전문기술 지원기관의 육성·지원	14. 전자정부 관련 자문위원회 의 운영 지원	28.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실태의 조사 및 분석	
18.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 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 원 등 전자정부 관련 전문기 관의 관리 및 운영 지원에 관 한 사항	15. 정보화책임관 협의회의 운 영 및 각 기관의 정보화담당 관의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29. 전자정부 관련 제품 도입· 발주에 관한 사항	
		30.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 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정보화사업성과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디지털정부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자정부 관련 통합적 성과 관리의 총괄·조정	1. 전자정부사업 수주·발주제 도 및 정보시스템 감리에 관 한 사항
		2. 전자정부 정보자원 투자 및	

성과관리 정책의 수립·추진

3. 전자정부 관련 통합적 성과
관리제도의 연구·개선

4. 전자정부 사업 중복투자 방
지에 관한 사항

5. 전자정부 사업 및 지역정보
화 사업의 사전협의·조정에 관
한 사항

6. 공공애플리케이션 관련 성과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행정관리 역량평가 중 정보
화 부문 총괄

8. 전자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
의 도입 및 확산 지원

9. 전자정부 정보자원 공동 활
용에 관한 사항

10. 행정서비스 및 정보의 연계·
통합 방안 수립

11. 전자정부 관련 통계의 조사,
지표의 개발·보급 및 조사·연구

2.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 제도
에 관한 사항

3. 전자정부 표준화 정책·제도
및 관련 표준의 제정·보급에
관한 사항

4. 전자정부 정보자원관리 정책
의 연구, 기획, 조정 및 법·제
도 개선

5. 전자정부 정보자원관리 기본
계획의 수립·시행 및 시책사
업의 발굴·추진

6. 전자정부 정보자원의 현황
조사, 수준 진단 및 지원

7. 전자정부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 및 통합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8. 전자정부의 상호운용성에 관
한 사항

9. 장애인·고령자 등의 전자정
부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에
관한 사항

10. 행정기관 등이 운영하는 웹
사이트의 접근성·호환성 등
품질관리 실태조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1. 전자정부 관련 통계의 조사,

지표의 개발·보급 및 조사·
연구

12. 전자정부 클라우드 시책 수
립 및 도입·구축 지원

13. 행정서비스 및 정보의 연계
·통합 방안 수립

14. 전자정부서비스 민간 개방
활성화 정책의 수립·시행 및
시범사업 발굴·추진

15. 전자정부서비스 민간 개방
을 위한 공통 플랫폼 구축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16. 행정기관의 공동활용을 위
한 응용 소프트웨어 및 표준
시스템의 개발·보급 및 유지
·관리 지원

17.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의
표준화 및 다기능 사무기기
규격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
항

18. 전자정부 공통서비스 및 공
통기반의 구축·지원

19. 전자정부 관련 통합적 성과
관리의 총괄·조정 및 제도
개선

20. 전자정부 정보자원 투자 및

성과관리 정책의 수립·추진 21. 전자정부 사업 중복투자 방 지에 관한 사항 22. 전자정부 사업 및 지역정보 화 사업의 사전협의·조정 에 관한 사항 23. 공공애플리케이션 관련 성 과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4. 행정관리 역량평가 중 정보 화 부문 총괄 25. 전자정부 관련 제품 도입· 발주에 관한 사항 26. 전자정부 관련 제품 시험· 평가(「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성능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이 고시된 정보보호시스템은 제외한다) 에 관한 사항 27. 전자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 의 도입 및 확산 지원 28. 전자정부 플랫폼(Platform) 구축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9.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업무의 운영 지원 ⑥ 스마트서비스과장은 다음 사	성과관리 정책의 수립·추진 21. 전자정부 사업 중복투자 방 지에 관한 사항 22. 전자정부 사업 및 지역정보 화 사업의 사전협의·조정 에 관한 사항 23. 공공애플리케이션 관련 성 과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4. 행정관리 역량평가 중 정보 화 부문 총괄 25. 전자정부 관련 제품 도입· 발주에 관한 사항 26. 전자정부 관련 제품 시험· 평가(「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성능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이 고시된 정보보호시스템은 제외한다) 에 관한 사항 27. 전자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 의 도입 및 확산 지원 28. 전자정부 플랫폼(Platform) 구축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9.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업무의 운영 지원 ⑥ 디지털안전정책과장은 다음	항을 분장한다. 1. 정보통신의 융합 등 전자정 부 발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협력사업의 추진 2. 신기술 기반의 전자정부서비 스 제공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정비에 관한 사항 3. 전자정부 분야 선도 기술 수 요의 창출 및 홍보에 관한 사 항 4. 전자정부 분야 선도 응용서 비스의 개발·제공 및 표준에 관한 사항 5. 전자정부 분야 선도 기술의 활용 관련 연구 및 관련 기관 ·단체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6. 전자정부사업 전문기관의 육 성 및 지원 7. 뉴미디어를 활용한 전자정부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8. 스마트워크센터 관련 기본계 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9. 스마트워크센터 관련 법령· 제도 개선 및 관련 기관 간 협 의·조정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보안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보안수준의 조사 및 보안개선 대책의 수립·시행 3.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사이버침해사고의 예방·대응 에 관한 사항 4.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모의훈련 및 지원에 관한 사 항 5.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6.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진 단, 개선조치 지원 및 전문인 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정보보호 기관·단체의 육성 ·지원 및 신기술 도입 등에 관한 사항 8.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 신기반시설의 보호계획 수립 에 관한 사항
---	--	---	---

10. 스마트워크센터 구축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21. 모바일 전자정부 공통기반의 구축에 관한 사항	19. 행정기관 공동활용을 위한 통신서비스의 개발·보급 및 확산
11. 전자정부 관련 재원의 조달·운용에 관한 사항	10.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2. 모바일 전자정부 추진을 위한 재원의 확보 및 행정기관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0. 지방자치단체의 통신업무 지원 및 통신보안업무의 지도·점검
12.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시책사업 및 시범사업의 발굴·추진	11.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한 보안서버의 적용 및 확산에 관한 사항	23. 모바일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보안성 확보에 관한 사항	21. 행정기관 내 인터넷전화 보급 및 활성화 정책의 수립·시행
13.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선정·관리에 관한 사항	12. 행정기관 전자문서의 진본성 확보 및 검증체계의 수립·추진		22. 행정기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제도의 수립 및 시행
14. 전자정부지원사업 재원의 확보 및 관련 업무의 부처 간 조정에 관한 사항	13. 행정기관 정보보호 인력 양성에 관한 시책의 수립·추진		23. 모바일 기반의 디지털 형태 신분증(이하 이 항에서 “모바일 신분증”이라 한다) 도입 관련 기술·제도·정책의 연구·개선에 관한 사항
15. 전자정부 관련 전문기술의 지원에 관한 사항	14. 행정전자서명 인증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 및 조정		24. 모바일 신분증 시범사업 추진 및 확산에 대한 사항
16. 입법부·사법부 등 공공기관의 전자정부 추진 지원	15. 행정전자서명 인증기관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25. 모바일 신분증 공통 플랫폼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7. 전자정부 클라우드 서비스 구축 및 운영	16.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⑦ 지역정보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지역디지털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8. 공공부문 영상회의의 관련 기본계획 수립·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17. 행정기관 정보통신망 관련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정보화 시행계획의 총괄·조정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공분야의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 전환 확산 관련 시책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9. 공공부문 영상회의의 관련 법령·제도 개선 및 관련 기관 간 협의·조정	18. 행정기관 도메인 이름 및 할당받은 아이피(IP) 주소 등 표준의 제정·개정	2. 지역정보화 정책의 수립·평가 및 관련 법·제도 개선에 관한	
20. 모바일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u>사항</u> 3. <u>지역정보화의 지원과 관련된 법인·단체의 육성 지원</u> 4. <u>지방자치단체의 지역문화·역사·생활정보 콘텐츠의 구축 지원</u> 5. <u>지역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의 추진 및 지원</u> 6. <u>미래 지역정보공동체의 조성 및 확산</u> 7. <u>지방행정데이터 개방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u> 8. <u>행정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행정공간정보 응용서비스의 개발·확산</u> 9. <u>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 통합 관제센터의 구축 및 지원</u> 10. <u>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를 활용한 부가서비스의 개발 및 지원</u> 11. <u>지능정보기술을 접목한 영상정보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u> 12. <u>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서비스 모델 발굴 및 추진</u>	2. <u>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정보화 시행계획의 총괄·조정</u> 3. <u>지역정보화 정책의 수립·평가 및 관련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u> 4. <u>시도·시군구 공통 행정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u> 5. <u>지역정보화의 지원과 관련된 법인·단체의 육성 지원</u> 6. <u>「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전문기관의 관리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u> 7. <u>지방자치단체의 지역문화·역사·생활정보 콘텐츠의 구축 지원</u> 8. <u>지역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의 추진 및 지원</u> 9. <u>정보화마을의 기획·선정 및 제도 개선</u> 10. <u>미래 지역정보공동체의 조성 및 확산</u> 11. <u>남북한 간 전자정부 관련 교류 및 협력</u>	13. <u>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서비스 관련 성과 분석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u> 14. <u>정보화마을의 기획·선정 및 제도 개선</u> 15. <u>남북한 간 전자정부 관련 교류 및 협력</u>	12. <u>지방행정데이터 개방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u> 13. <u>행정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행정공간정보 응용서비스의 개발·확산</u> 14. <u>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및 지원</u> 15. <u>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를 활용한 부가서비스의 개발 및 지원</u> 16. <u>지능정보기술을 접목한 영상정보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u> 17. <u>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서비스 모델 발굴 및 추진</u> 18. <u>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서비스 관련 성과 분석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u> 19. <u>공공분야 디지털 고지·수납 공통 플랫폼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u> 20. <u>공공분야 디지털 고지·수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u>
--	---	---	--

⑧ <u>글로벌전자정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 7. (생략) 8. <u>전자정부 수출 관련 기업 지원, 수출 동향 분석 및 사업 정보 공유</u> 9. <u>전자정부 수출 관련 통계 분석 및 관리</u> 10. <u>전자정부 수출 대표시스템 상품화에 관한 사항</u> 11. (생략) <u><신설></u> <u><신설></u> <u><신설></u>	⑧ <u>국제디지털협력과장-----</u> -----. 1. ~ 7. (현행과 같음) 8. <u>전자정부 해외진출 관련 동향 분석 및 사업정보 공유 등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u> 9. ----- <u>해외진출</u> ----- 10. ----- <u>해외진출</u> ----- 11. (현행과 같음) 12. <u>전자정부 관련 해외 홍보에 관한 사항</u> 13. <u>전자정부 관련 해외 정책 및 기술 동향의 수집·분석에 관한 사항</u> ⑨ <u>공공데이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제도·정책의 연구·개선</u> 2. <u>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u> 3. <u>공공데이터 관련 현황 조사 및 범정부 데이터관리체계에</u>			<u>관한 사항</u> 4. <u>공공데이터 관련 운영실태 조사 및 평가</u> 5. <u>공공데이터 포털의 구축 운영 및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u> 6. <u>공공데이터 품질 관리 및 진단</u> 7. <u>공공데이터 표준화 정책 및 관련 표준의 제정·보급에 관한 사항</u> 8. <u>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u> 9. <u>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지원</u> 10. <u>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u> 11. <u>공공데이터 개방·활용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시책 사업 발굴·추진</u> 12. <u>공공데이터 관련 공공기관의 민간 중보·유사 서비스 개발·제공에 관한 실태조사 및 개선권고</u> 13. <u>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발전 지원</u>
---	--	--	--	---

<신 설>

14. 공공데이터 관련 교육·훈련 및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
15. 공공데이터 시책사업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16. 국가기준정보의 지정, 품질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7. 국가기준정보 등 주요 공공데이터의 관리·보존체계 및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 ⑩ 공공데이터유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정보 공유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
 2. 행정정보 공유에 관한 법령 및 제도 개선
 3. 행정정보 공유를 위한 기관 간 협의·조정
 4. 행정정보 공유에 관한 기준 및 절차의 수립·시행
 5. 행정정보 공유 신청에 대한 승인
 6. 행정정보 공유 활성화 및 실태조사·연구
 7. 행정정보 공유 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

8. 정책정보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유통 기반구축 계획의 수립·시행
9. 행정정보 공동이용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10. 행정정보 목록 관리 및 공동이용 행정정보 현황조사에 관한 사항
11. 행정정보 공동이용·유통을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
12. 행정정보 표준화, 품질관리 등 공동이용을 위한 관리체계 마련
13.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제공 및 확대
14. 행정정보 공동이용 이력 기록 유지·관리
15.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교육
16. 행정정보 공동이용 기반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조치
17.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조치
18.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신 설>

- 운영 및 관련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19. 공공분야 개인 맞춤형 데이터 활용 서비스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수립·시행
20. 공공분야 개인 맞춤형 데이터 활용 서비스 포털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21. 공공분야 개인 맞춤형 데이터 활용 서비스 이용 활성화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⑪ 빅데이터분석활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분야 빅데이터에 관한 제도의 운영·개선 및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공공분야 빅데이터 관리체계 및 분석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 및 점검
3. 공공분야 빅데이터의 활용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공공분야 빅데이터 공동기반 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5. 공공분야 빅데이터 분석·활

- ⑨ 정보자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자정부 정보자원의 현황 조사, 수준 진단 및 지원
2. 전자정부 정보자원관리 기본

- 용을 위한 공공·민간 데이터 수집·분석 및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6. 공공분야 빅데이터 분석·활용을 위한 데이터 관리에 관한 사항
7. 공공분야 빅데이터 분석·활용 관련 신기술 도입에 관한 사항
8. 공공분야 빅데이터 분석과제 발굴 및 수행에 관한 사항
9. 공공분야 빅데이터 분석·활용 활성화를 위한 기술지원 및 공무원 등의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10. 공공분야 빅데이터 분석·활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조치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11. 공공분야 빅데이터 분석·활용 관련 민간 협력에 관한 사항
- ⑫ 공공지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능형 전자정부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2. 공공분야 인공지능 관련 정

계획의 수립·시행 및 시책사업의 발굴·추진 3. 전자정부 정보자원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연구·개선 4. 전자정부 정보자원관리 정책의 연구·기획 및 조정 5. 전자정부의 상호운용성에 관한 사항 6. 행정기관 정보통신망 관련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7. 행정기관 도메인 이름 및 할당받은 아이피(IP) 주소 등 표준의 제정·개정 8. 행정기관 공동활용을 위한 통신서비스의 개발·보급 및 확산 9. 지방자치단체의 통신업무 지원 및 통신보안업무의 지도·점검 10. 행정기관 내 인터넷전화 보급 및 활성화 정책의 수립·시행 11. 전자정부 정보자원의 통합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2. 행정기관의 공동활용을 위한 응용 소프트웨어 및 표준	책의 수립 및 조정 3. 공공분야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공공분야 인공지능 기술 활용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가공 및 공동 이용에 관한 사항 5. 공공분야 인공지능 관련 신기술 도입에 관한 사항 6. 공공분야 인공지능 활성화를 위한 과제 발굴, 수행, 기술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7. 공공분야 인공지능 윤리 개발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8. 공공분야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신규 서비스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9. 인공지능 기반 국민비서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통 플랫폼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0. 인공지능 기반 통합 민원상담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11. 공공분야 인공지능 공통기반 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 12. 정보통신의 융합 등 전자정	시스템의 개발·보급 및 유지·관리 지원 13. 전자정부 플랫폼(Platform) 구축에 관한 사항 14. 전자정부 플랫폼 제도정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 15. 전자정부 공통서비스 및 공통기반의 구축·지원 16. 행정기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제도의 수립 및 시행 17. 전자정부 클라우드 시책 수립 및 도입·구축 지원 18. 행정기관 홈페이지의 연구·평가·조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9. 장애인·고령자 등의 전자정부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에 관한 사항 20. 국가기관 등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접근성 실태조사 및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 21. 전자정부 관련 제품 시험·평가(「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성능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이 고시된 정보보호시스템은 제외한다)	부 발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협력사업의 추진 13. 신기술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정비에 관한 사항 14. 전자정부 분야 선도 기술 수요의 창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5. 전자정부 분야 선도 응용서비스의 개발·제공 및 표준에 관한 사항 16. 전자정부 분야 선도 기술의 활용 관련 연구 및 관련 기관·단체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17. 전자정부사업 전문기관의 육성 및 지원 18. 뉴미디어를 활용한 전자정부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19. 전자정부 관련 재원의 조달·운용에 관한 사항 20.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시책사업 및 시범사업의 발굴·추진 21.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선정·관리에 관한 사항
---	---	---	---

에 관한 사항	22. 전자정부지원사업 재원의 확보 및 관련 업무의 부처 간 조정	6.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진단, 개선조치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제도 개선 및 관련 기관 간 협의·조정
22.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의 표준화 및 다기능 사무기기 규격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3. 전자정부 관련 전문기술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정보보호 기관·단체의 육성·지원 및 신기술 도입 등에 관한 사항	7. 스마트워크센터 구축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23. 전자정부 표준화 정책·제도 및 관련 표준의 제정·보급에 관한 사항	24. 입법부·사법부 등 공공기관의 전자정부 추진 지원	8.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8. 전자정부 클라우드 업무서비스 구축 및 운영
24.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업무의 운영 지원		9.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9. 공공부문 영상회의의 관련 기본계획 수립·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⑩ 정보기반보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⑬ 지능행정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0.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0. 공공부문 영상회의의 관련 법령·제도 개선 및 관련 기관 간 협의·조정
1.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보안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1.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공공분야 업무환경 개선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1.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11. 모바일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2.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보안수준의 조사 및 보안개선 대책의 수립·시행	2. 정부통합지식행정시스템의 운영·개선 및 이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	12.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 모바일 전자정부 공통기반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사이버침해사고의 예방·대응에 관한 사항	3. 협업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13. 행정전자서명 인증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 및 조정	13. 모바일 전자정부 추진을 위한 재원의 확보 및 행정기관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모의훈련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신기술 기반의 전자적 의사소통 수단 도입 및 운영	14. 행정전자서명 인증기관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14. 모바일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보안성 확보에 관한 사항
5.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5. 스마트워크센터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5.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스마트워크센터 관련 법령·	16.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한 보안서버의 적용 및 확산에 관	

한 사항			
15. <u>행정기관 전자문서의 진본 성 확보 및 검증체계의 수립 · 추진</u>			
16. <u>행정기관 정보보호 인력 양 성에 관한 시책의 수립·추진</u>			
⑪·⑫ (생략)	⑭·⑮ (현행 제11항 및 제12항 과 같음)		
제11조(지방자치분권실) ① ~ ⑫ (생략)	제11조(지방자치분권실) ① ~ ⑫ (현행과 같음)		
⑬ 자치법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⑬ ----- -----.		
1. ~ 9. (생략)	1. ~ 9. (현행과 같음)		
<신설>	10. <u>자치법규정보시스템의 운용 및 개선</u>		
<신설>	11. <u>주민조례청구 등 주민참여 지원시스템 구축 및 운용</u>		
10. (생략)	12. (현행 제10호와 같음)		
⑭ ~ ⑲ (생략)	⑭ ~ ⑲ (현행과 같음)		
제50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⑦ (생략)	제50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행정기 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 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 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	⑧ ----- ----- ----- ----- -----		
		서 같다)은 별표 10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 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 다)은 12명을, 3급 또는 4급 공 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 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 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 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 으로 한다.	-----. ----- ----- ----- 11명 ----- ----- ----- ----- ----- ----- ----- ----- ----- -----
		⑨ (생략)	⑨ (현행과 같음)
		제53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제53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 라 행정한류담당관, 글로벌전자 정부과장, 개인정보보호협력과 장, 비상대비훈련과장, 지진방 재정책과장, 재난보험과장, 지 방자치인재개발원 국제교육협 력과장, 국가기록원 복원관리과 장·기록정보기반과장, 정부청 사관리본부 제주청사관리소장 · 과천청사관리소 시설과장, 국	② ----- ----- 국제디지털 협력과장 ----- ----- ----- ----- ----- ----- ----- ----- ----- -----

립과학수사연구원에 두는 과장	-----
중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하는 과	-----
장 2명,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
두는 과장 중 기본운영규정으로	-----
정하는 과장 1명 및 국립재난안	-----
전연구원에 두는 과장 중 기본	-----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과장 1명	-----
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
있다.	---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2]
행정안전부 공무원 정원표(제49조제1항 본문 및 제51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1,582</u>	<u>1,596</u>	+14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 원은 제외한다)	<u>1,580</u>	<u>1,594</u>	+14
·	·	·	
·	·	·	
일반직 계	<u>1,550</u>	<u>1,564</u>	+14
·	·	·	
·	·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u>61</u>	<u>62</u>	+1
·	·	·	
·	·	·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 사무관·공업사무관·전 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 사무관	<u>1</u>	<u>2</u>	+1
·	·	·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전산사 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23</u>	<u>26</u>	+3
·	·	·	
·	·	·	
전산사무관	<u>31</u>	<u>32</u>	+1
·	·	·	
·	·	·	
행정주사·시설주사·공업 주사·방송통신주사 또 는 전산주사	<u>16</u>	<u>20</u>	+4
·	·	·	
·	·	·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 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u>10</u>	<u>13</u>	+3
·	·	·	
·	·	·	

행정서기·공업서기·시 설서기·방재안전서기 ·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 신서기	<u>32</u>	<u>33</u>	+1
·	·	·	
·	·	·	

[별표 2의2]

행정안전부 공무원 정원표(제49조제1항 단서 및 제51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1,595</u>	<u>1,609</u>	+14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u>1,593</u>	<u>1,607</u>	+14
·	·	·	
·	·	·	
일반직 계	<u>1,563</u>	<u>1,577</u>	+14
·	·	·	
·	·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u>61</u>	<u>62</u>	+1
·	·	·	
·	·	·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1</u>	<u>2</u>	+1
·	·	·	
·	·	·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23</u>	<u>26</u>	+3
·	·	·	
·	·	·	
전산사무관	<u>31</u>	<u>32</u>	+1
·	·	·	
·	·	·	
행정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전산주사	<u>16</u>	<u>20</u>	+4
·	·	·	
·	·	·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u>10</u>	<u>13</u>	+3
·	·	·	
·	·	·	

행정서기·공업서기·시 설서기·방재안전서기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 신서기	<u>29</u>	<u>30</u>	+1
·	·	·	
·	·	·	

[별표 10]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무원 정원표(제50조제8항 및 제51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302</u>	<u>288</u>	-14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 원은 제외한다)	<u>301</u>	<u>287</u>	-14
일반직 계	<u>301</u>	<u>287</u>	-14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298</u>	<u>284</u>	-14
·	·	·	
·	·	·	